

『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종 철

나. 제안이유

-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1995.1.1)되었으나,
- 상위법 근거 없는 임의조례로 「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」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의 적용으로 현행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」 폐지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「구미시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」은,

- 현행 「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」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으로 농공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「구미시농공지구 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」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